

25.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2020년 8월 28일
- 제안자 : 홍인표, 김대현, 김재우, 박우근, 송영현, 안경은, 이만규, 이시복, 정천락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9월 2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년 9월 9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홍인표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 용자금이나 용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고, 용자 신청, 조건 및 상환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며 용자 업무의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(안 제15조의2)
-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대상에 대해 규정함(안 제18조)

- 주차장 설치비용의 용자 신청에 대해 규정함(안 제19조)
- 용자의 조건 및 상환에 대해 규정함(안 제19조의2)
- 용자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(안 제19조의3)
- 보조금 및 용자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함(안 제20조)
- 권한위임에 대해 규정함(안 제21조)

□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
- 산·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참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진성)

□ 주요 내용

-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 용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임.
- 안 제2조의3 제2항 제4호에서는 「주차장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를 「주차장법」 제2조에서

규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,

- 안 제15조의2, 안 제18조, 안 제19조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를 위한 대상을 구체화하고, 주차장 설치비용의 용자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명문화하였음.
- 또한, 안 제19조의3 및 안 제20조는 효율적인 용자업무 관리를 위해 용자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및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 용자금의 환수조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음.
- 이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,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 용자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임.
- 안 제19조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용자받는 경우 시장이 그 이자를 보전하고, 용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는데,
- 이는 기존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용자 규칙에 의거 연 2%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, 용자금은 3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한 것에서 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없애고 상환기간 단축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- 그 밖의 안 제21조 등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였음.

□ 검토의견

-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주차공간의 관리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,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로 인해 사업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본 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, **안 제19조의2**에서 기존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용자 규칙상의 용자조건을 변경하여 명시하였으므로,
- 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등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의	답	변
○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 용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 예산산정 및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?		○ 조례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될 경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.	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